

※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, 운영관리

●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

1.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주야간보호 44명으로 하며, 시설 인력기준에 맞추어 시·군·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.
2. 이용대상은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.
3. 대표자(또는 시설장)는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정상적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 - 1) 센터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.
 - 2) 센터는 타지역 거주 입소자 비율을 30%미만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일산서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장기요양제도를 홍보 활동을 함으로 수급자를 확보한다.
 - 3) 지역사회 유관기관, 사회복지전문요원, 재가복지시설, 경로당, 지역단체의 모임, 지역단위경로행사,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.
 - 4) 소식지 발간,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.

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

1. 계약기간

- 1)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.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2)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3)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 다만, 재계약시 이용자나 보호자님이 대면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, 이용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보호자님의 직장생활이나 건강상의 문제 또는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상황등으로 대면할수 없을 때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자나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해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눠 보관하여야 한다.
- 4)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 -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- ② 본인부담률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5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- 6) 등급되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정원이하일 때만 수급자로 할 수 있으며, 급여수가에 준하여 본인부담금 100%를 수급자에게 받는다.
(등급외 란 : 신규이용자가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고 난 후 등급결정 대기상태로 있을 때를 말하며 기관이 정원미만 일때에만 가능함)

2. 계약목적

- 1) 센터의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2)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“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”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3)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.
 - ① 계약 당사자
 - ② 계약기간
 -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-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4)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5)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.

● 계약의 해제

-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-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 -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-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-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-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 -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월 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부담액

구 분		금액(원/%)	내 역
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	공단지원금	총액의85%	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%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.
	개인부담금	총액의15%	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, 저소득층 9%, 차상위 수급자 6%
비급여 항목	식사재료비	3,500원*2식	7,000원 * 26일 = 182,000원/월
	간식	500원*2회	1,000원 * 26일 = 26,000원/월
	이미용료	개별부담	-

●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의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
-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-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●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,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
-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